결 정





헌 법 재 판 소

헌법재판소
www.ccourt.go.kr

헌 법 재 판 소

제1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2015헌마119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위헌확인

청 구 인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외 17
대리인 법무법인 인의

결 정 일 2016. 1. 12.

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.

주 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.

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

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

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

www.ccourt.go.kr KORT 헌법재판소

정본입니다.

2016 . 1 . 16 .

헌 법 재 판 소

법원사무관 최 성 훈

헌재법 제40조 제1항
민소법 제162조 제6항

※아래 바코드 스캔후 바코드 인식프로그램을 통하여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